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및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 환경 변화로 인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근거 마련 및 용어 전반 재정립 (안 제1조 등)
-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개정(안 제2조)
-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조항 개정·신설(안 제3·4조)
- 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마. 위원장 연임제한 조항 신설(안 제8조제1항)
-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10조)
- 사.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조항 신설(안 제11조제2항)
- 아.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조항 신설(안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 (1)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별도 시행
  - (2) 규제심사 : 별도 시행
  - (3) 입법예고 기간 : 2015. 9월 (20일간)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비용발생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12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에 의거 작성 생략

### 3. 미첨부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제정에 따른 운영 근거와 관련사항 개정으로 예상되는 추가 비용은 없음

###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지원과장 조 충 현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따른 자활기 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 위원을 2/3 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구청장·복지환경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⑥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서 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2/3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팀장, 방문보건팀장, 실무 분과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각 1명을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동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동 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동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⑤ 동 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
- ⑥ 공무원인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⑦ 위원장은 전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 ⑧ 동 협의체는 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를 위해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전문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⑨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⑩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3조와 제4조,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 명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각 협의체 위원장과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원 중심의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전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회의결과를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동 주

민센터에 비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칙)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 참고

## 상위 및 관계법령

### □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복지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

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